##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양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509

발의연월일: 2024. 11. 13.

발 의 자:이양수・이인선・조지연

박덕흠 • 최형두 • 임종득

배준영 · 조은희 · 서범수

김장겸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선 소유자로 하여금 어선을 항행 또는 조업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어선검사증서 · 어선특별검사증서 또는 임시항행검사 증서를 어선에 비치하도록 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어선을 포함하여 바다를 항해하는 선박은 특성상 해수의 유입 등으로 인해 어선 또는 선박 내에 비치하고 있는 종이 증서의 훼손·분실이 잦아 관리에 어려움이 있음.

또한 훼손·분실될 경우 어민들은 증서를 재발급 받아야 하는 불편을 겪게 되고 검사증서(인쇄물)의 재발행으로 인한 행정력 또한 낭비되어 유·무형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현행 선박안전법에서도 전자적 형태의 증서를 포함하고 있듯 어선의 경우에도 전자적 형태의 검사증서 비치를 인정하는 규정을 마 련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29조).

법률 제 호

##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본문 중 "임시항행검사증서"를 "임시항행검사증서(각각 전자적형태의 증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9조(검사증서 등의 비치) 어선	제29조(검사증서 등의 비치)		
의 소유자는 어선을 항행 또는			
조업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에는 어선검사증서 · 어선특별			
검사증서 또는 <u>임시항행검사증</u>	임시항행검사증서		
<u>서</u> 를 어선에 비치하여야 한다.	(각각 전자적 형태의 증서를		
다만, 「내수면어업법」 제6조,	<u> 포함한다)</u>		
제9조, 제11조, 「양식산업발전			
법」 제10조제1항제6호, 제43조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면허어업 • 허가어업 • 신고어업			
또는 양식업에 사용하는 어선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		